

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1999. 4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건표)

가. 제안이유

○ 여성·청소년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력 개발, 영·유아의 보호 육성 등 시민에게 복지증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

○ 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문화센터의 업무(안 제3조)

1.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취미, 기술, 교양강좌 등 능력배양
2. 청소년의 창의력개발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취미, 기술, 교양강좌 등 정서함양
3. 공연장, 수영장, 체육관 등 문화, 체육시설 운영
4. 영·유아의 건전한 보호 육성
5. 기타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상 필요한 사업

○ 사용허가(안 제4조)

1.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도 또한 같음
2. 신청자의 경합시 우선순위에 의거 허가

○ 운영(안 제5조) :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가능

○ 사용료(안 제8조)

1. 사용료, 수강료 및 보육료를 구분하여 별표로 정함
2.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
3.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책상 필요시에는 감액 가능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몇 개소입니까?	○ 11개소입니다.
○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삼정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와 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운영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까?	○ 다목적설치조례안은 따로 있으며 고강복지관이 여기에 해당되며, 여성회관, 청소년회관과 다목적복지회관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하는 것입니다.
○ 중동복지관과 심곡본1동 복지관은 별도 조례가 없는지요?	○ 별도로 없고 적용하려면 다목적복지회관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.
○ 부천시 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설치조례안이 2개 안이 올라 왔는데 나중에 올라온 안이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조직 및 운영, 위원회설치가 추가되어 있는데 어느 안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요?	○ 먼저 올린 안은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린 안이고 두번째 안은 그 후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좋은 안이 제기된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나 나중 안이 조금 진보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.

○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용료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기능, 취미교실 수강료는 기타 복지관보다 낮게 책정되어, 복지관간의 갈등요소가 생길 우려가 있는 바, 이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복지관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?

○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. 다른 복지시설과 비용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?

○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여기에 위탁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?

○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복지관의 취미교실을 조사했습니다. 서울특별시에는 모두 20,000원을 상회했으며 부천시와 비교할 수 없어서 기초 3시간은 15,000원으로 정했습니다.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며, 인근에 있는 시 자체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용료와 민간단체에서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용료와 비교평가 했으며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시민복지차원과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민간분야보다 싸야 된다는 원칙론이 지배적이었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하였습니다.

○ 수정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.

○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○ "별첨"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## 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138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12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#### □ 수정이유

- 동조례안에는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센터의 관장 업무가 여성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,
-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하게 되었음.

#### □ 주요골자

- 시설의 종류를 여성문화센터, 청소년문화센터, 보육정보센터로 구분하여 신설(안 제2조제2항)
- 업무를 문화센터별로 구분하여 세분화(안 제3조)
- 운영위원회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과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하는 규정 신설(안 제4조)
-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(안 제5조)

### 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(목적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여성·청소년 등 시민에게 평생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(이하 "문화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치 및 시설의 종류) ①문화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-2번지에 둔다.

②문화센터에는 여성문화센터, 청소년문화센터,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을 둔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업무) 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①여성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교육 및 여가교육
2.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
3.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육성
4.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활동

②청소년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교육·문화활동
2.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
3. 청소년의 국제화·정보화 시대에 맞는 능력배양

③문화기획·문화예술 경영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문화·예술활동 기획 및 조정
2. 각종 문화EVENT 발굴 시행
3. 문화·예술관련 인력 양성
4. 시민회관 및 기타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운영에 관한 역할 수행

④기타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공연장, 수영장, 체육관 등 문화·체육시설 운영
2. 영·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
3.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공익상 필요한 사업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 설치) ①여성 및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과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지급) 제5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6조부터 14조로 한다.

안 별표 5항 기능, 취미교실 수강료의 비교란의 2번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전문직업 교육 및 취미교육 중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교육은 재료비 및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과 청소년 등 시민에게 복지증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북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(이하 “문화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과 청소년 등 시민에게 평생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북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(이하 “문화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위치) 문화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-2번지에 둔다. (신설)</p>	<p>제2조(위치 및 시설의 종류) ①(제정안과 같음) ②문화센터에는 여성문화센터, 청소년문화센터,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을 둔다.</p>
<p>제3조(업무) 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	<p>제3조(업무) 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취미, 기술, 교양강좌 등 능력배양</li> <li>2.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취미, 기술, 교양강좌 등 정서함양</li> <li>3. 공연장, 수영장, 체육관 등 문화·체육시설 운영</li> <li>4. 영·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</li> <li>5. 기타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상 필요한 사업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여성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교육 및 여가교육</li> <li>2.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</li> <li>3.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육성</li> <li>4.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활동</li> </ol> </li> <li>②청소년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교육·문화활동</li> <li>2.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</li> <li>3. 청소년의 국제화·정보화시대에 맞는 능력배양</li> </ol> </li> <li>③문화기획·문화활동 경영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문화·예술활동 기획 및 조정</li> <li>2. 각종 문화EVENT 발굴시행</li> <li>3. 문화·예술관련 인력 양성</li> <li>4. 시민회관 및 기타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역할 수행</li> </ol> </li> </ol>

(신설)

(신설)

- 제4조(사용허가 등) ①~③(생략)
- 제5조(시설운영의 위탁) (생략)
- 제6조(교육 및 강사위촉) ①~②(생략)
- 제7조(사용제한) ①~③(생략)
- 제8조(사용료 등) ①~③(생략)
- 제9조(사용료의 반환) (생략)
- 제10조(관람료) ①~③(생략)
- 제11조(소해배상 등) ①~③(생략)
- 제12조(시행규칙) (생략)
- (별표)-안 8조 관련
- 5. 기능, 취미교실 수강료

④기타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공연장, 수영장, 체육관 등 문화·체육시설 운영
- 2. 영·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
- 3.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공익상 필요한 사업

제4조(운영위원회 설치) ①여성 및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과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지급) 제4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허가 등) ①~③(제정안과 같음)

제7조(시설운영의 위탁) (제정안과 같음)

제8조(교육 및 강사위촉) ①~②(제정안과 같음)

제9조(사용제한) ①~②(제정안과 같음)

제10조(사용료 등) ①~③(제정안과 같음)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(제정안과 같음)

제12조(관람료) ①~③(제정안과 같음)

제13조(손해배상 등) ①~③(제정안과 같음)

제14조(시행규칙) (제정안과 같음)

(별표)-안 11조 관련

5. 기능, 취미교실 수강료

비 고	비 고
1. (생략) 2. 기술교육 중 컴퓨터, 미싱, 요리교실 등 부 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을 제외한 기 타 기술교육은 취미교육에 해당하는 수강 료를 징수함	1. (제정안과 같음) 2. 전문직업 교육 및 취미교육 중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교육은 재료비 및 교육비를 조정 할 수 있다.

[수정안 포함]

### 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·청소년 등 시민에게 평생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  
 대하고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(이하 "문화센터"  
 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 및 시설의 종류) ①문화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-2번지에 둔다.

②문화센터에는 여성문화센터·청소년문화센터 및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을 둔다.

제3조(업무) 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여성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- 가.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교육 및 여가교육
  - 나.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
  - 다.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육성
  - 라.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활동
2. 청소년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- 가.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교육·문화활동
  - 나.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
  - 다. 청소년의 국제화·정보화시대에 맞는 능력배양
3. 문화기획·문화예술 경영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- 가. 문화·예술활동의 기획 및 조정
  - 나. 각종 문화이벤트 발굴 시행
  - 다. 문화·예술관련 인력양성
  - 라. 시민회관 및 기타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운영에 관한 역할 수행

4. 기타업무는 다음과 같다.

가. 공연장, 수영장, 체육관 등 문화·체육시설운영

나. 영·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

다.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상 필요한 사업

제4조(운영위원회 설치) ①여성 및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과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지급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허가 등) ①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문화센터의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

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시설운영의 위탁)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 및 강사위촉) ①시장은 청소년 및 여성의 정서함양과 능력배양을 위한 기능, 취미, 교양강좌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문화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강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사용제한 등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2.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
4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5. 공익상 또한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중대히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용료 등) ①문화센터의 수용료, 수강료 및 보육료(이하 "사용료"라 한다)는 별표와 같다.

②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문화센터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
2.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반환
3.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

제12조(관람료) ①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관람료는 관람권, 예매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%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③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시행하고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발행매수의 20%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.

제13조(손해배상 등) ①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②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내에 문화센터의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당해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
③사용자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복사골여성·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

1. 기본시설 사용료

(공연장)

(단위 : 원)

구분	사용시간	평 일			휴 일			비 고
		오 전	오 후	야 간	오 전	오 후	야 간	
대 공 연 장	2시간	75,000	100,000	125,000	100,000	125,000	150,000	1. 오전, 오후, 야간 시간대별 사용료 기 준은 사용빈도가 많 은 시간대(3시간)를 기준으로 하여 1시 간 마다 10% 이내 로 가감산출  2. 시간대가 중복될 때 에는 시간 범위가 많이 포함된 시간 대를 적용  3. 청소년(초, 중, 고) 및 공연연습을 위 한 무대 사용시는 해당요금의 50%를 적용  4. 휴일은 토요일, 일 요일, 공휴일로 합
	3시간	82,000	110,000	137,000	110,000	137,000	168,000	
	4시간	91,000	121,000	151,000	121,000	151,000	185,000	
	5시간		133,000	166,000		166,000	203,000	
	6시간			183,000			224,000	
	1일		234,000			306,000		
중 강 당	2시간	40,000	49,000	58,000	49,000	58,000	66,000	3. 청소년(초, 중, 고) 및 공연연습을 위 한 무대 사용시는 해당요금의 50%를 적용  4. 휴일은 토요일, 일 요일, 공휴일로 합
	3시간	45,000	54,000	64,000	54,000	64,000	73,000	
	4시간	50,000	60,000	70,000	60,000	70,000	80,000	
	5시간		66,000	77,000		77,000	88,000	
	6시간			85,000			97,000	
	1일		120,000			140,000		

(체육관)

(단위 : 원)

사용구분	사용시간	사용기준	요 액		비 고
			평 일	토, 일, 공휴일	
실내체육시설	전용	가. 체육경기 • 주간(08:00~17:00) • 야간(17:00~23:00)	20,000 30,000	30,000 45,000	
		나. 체육행사 • 주간(08:00~17:00) • 야간(17:00~23:00)	40,000 60,000	90,000 90,000	
	이용료 (운동연습)	가. 개인 : 2시간당 나. 단체(동일팀 10인 이상) : 2시간당	1,000 800	1,000 800	

(기타시설)

(단위 : 원)

사용구분	사용시간	사용기준	요 액	비 고
세미나실	2시간		20,000	
독서토론실	2시간		20,000	
분 장 실	4시간	2개소(남, 녀 기준)	10,000	
음악감상실	1인/2시간	청소년	5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청소년 : 고등학생 이하</li> <li>• 일 반 : 대학생 이상</li> </ul>
		일 반	1,000	
독 서 실	1개월	청소년	4,200	
		일 반	7,000	
	1일	청소년	300	
		일 반	500	
노 래 방	1실/1시간		5,000	
디스크장	1시간/1인		2,000	단체(10명 이상) : 1,000원
전 시 실	1일(09:00~21:00)	3.3m²(1평)	200	조명료는 별도 1일 10,000원 징수
합 숙 관	1인/1박	청소년	3,000	단체에 한함
		일 반	6,000	단체에 한함

2. 부대시설 사용요금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	
악 기	가. 그랜드피아노(대)	1회	20,000	1. 연습공연시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 히 기준액의 50% 적용 2. 마이크(유선)1개 추가시 2,000원 추가 징수
	나. 그랜드피아노(소)	1회	15,000	
	다. 업라이트피아노	1회	10,000	
음 향	가. 마이크(유선)	1회(2개)	5,000	3. 무선마이크 1개 추가시 3,000원 추가 징수 4. 녹음료는 사용자 테이프 부담으 로 하고 60분용 기준 1개 추가시 동일 금액 추가 징수
	나. 무선마이크	1회(2개)	6,000	
	다. 녹음료	1회(1개)	3,000	
	라. 녹음기	1회(1대)	3,000	
	마. 무선인터컴	1회(3대)	6,000	
	버. 컨트롤 음향기	1회(1식)	50,000	

구 분		기 준	요 액	비 고
조 명	가. 종합조명 • 대공연장	1회	30,000	5. 무선인터컴 1대 추가시 2,000 원 추가 징수 6. 무대 조명기기 사용량이 20kw 이상 일 때 종합조명이라 함 7. 기본시설 전기사용료(무대, 객 석조명료)를 일반조명이라 함 8. 조명기기는 외부에서 반입사용 할 때는 당센터 종합조명 사용 료에 준함
	• 중강당	1회	25,000	
	나. 일반조명 • 대공연장	1회	20,000	
	• 중강당	1회	15,000	
	다. 체육관 조명	1회	10,000	
무 대	가. 무대부대시설	1회	10,000	
영 사	가. 영사기(35mm)	1회	20,000	
	나. 영사기(16mm)	1회	10,000	
	다. 환등기	1회	5,000	
전기료			사용액	
냉·난방료	가. 냉방	1시간당	사용시간과 연 료, 전기료 고 시시가에 의함	
	나. 난방	1시간당		
기 타	가. 행사용 의자 연대	1식	5,000	
	나. 현수막 게첩료	1건	5,000	
	다. 영화촬영 및 비디오 촬영	1건	10,000	
	라. 라디오 중계료(TV)	1회	5,000	

## 3. 상행위 사용료

(단위 : 원)

요 금 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프로그램선전책자 판매	판매부수×1부당 가격	판매금액의 20%	프로그램 및 기타물품 등 을 판매시 시장 승인
기타 물품 판매	매출금액원가×판매수량	실판매이익의 20%	

4. 상시이용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기 준	사 용 료			비 고
			어린이	청소년	일 반	
수영장	강 습	1인/월	40,000	45,000	55,000	• 주 3회 강습
	자유이용	1인/월	35,000	40,000	45,000	• 어린이 : 초등학교 이하 • 청소년 : 중·고등학교 • 일 반 : 대학생 이상
	1일 이용	1인/일	3,000	3,500	4,000	
탁구장	강 습	1인/월		30,000	40,000	• 주 3회 강습
	자유이용	1인/월		20,000	30,000	
	1시간	1대/1시간		3,000	3,000	
스쿼시	강 습	1인/월		51,000	68,000	• 주 3회 강습
에어로빅		1인/월		45,000	45,000	
배드민턴	강 습	1인/월		30,000	30,000	• 주 3회 강습
	자유이용	1인/2시간		1,000	1,000	
헬스		1인/월		35,000	50,000	

5. 기능, 취미교실 수강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수 강 료	비 고
기술교육 (1인/월)	주 3시간 이하	15,000	1.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 정 등은 무료 2. 전문직업교육 및 취미교육 중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교육은 재료비 및 교육비 를 조정할 수 있다.
	주 4~5시간	17,000	
	주 6~7시간	19,000	
	주 8~9시간	21,000	
	주 10~11시간	23,000	
	주 12시간 이상	25,000	
취미교육 (1인/월)	주 3시간 이하	10,000	
	주 4~5시간	12,000	
	주 6~7시간	14,000	
	주 8~9시간	16,000	
	주 10~11시간	18,000	
	주 12시간 이상	20,000	
교양강좌		무 료	무 료

6. 보육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비 교
보육료	1인/월	보건복지부 표준 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	시간 보육은 안분비율에 의거 징수